

제 1100 호
1985.5.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 모 관
편집인 : 공 모 관 조 남 호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348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3
제 349 호 : 마포로제 2 구역 4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3
제 35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변경결정	15
제 35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16
제 35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포장) 실시계획인가	18
◎ 구청공고	
강동구공고제 42 호 : 관인개각사용승인공고	20

구 번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시

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5. 5. 2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변경 결정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반포지구	강남구 반포동 30부락의 3개소	5,508,000	감 30,146	5,477,854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49 호

**마포제 2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622 호 ('84.11.1)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마포제 2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제 40조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제 16조 및 동법시행령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5.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 마포제 2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마포구 공덕동 278-3 외 39필지

다. 시행면적 : 4,764㎡

라. 시행자 : 주소,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8-3

2) 성명 : 마포 2구역 4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최창호

마. 사업시행기간 : '84.11.1-'87.4.30

바.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내지 및 건축시설

- 1) 대지 : 3,687 m^2
- 2) 건축시설 : 35,840.5 m^2
- 3) 층수 : 지상 18층, 지하 4층
- 4) 용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나. 분양설계

- 1) 토지 : 시행구역내 토지 40필지를 4,764 m^2 중 공공시설 부담면적 1,077 m^2 를 제외한 3,687 m^2 를 1필지로 지적 정리하여 분양대상자별로 공유지분으로 한다.

2) 건물

가) 사업시행으로 신축된 건축물

35,840.5 m^2 를 조합원의 종전토지면적에 별도처분 비율을 승한면적으로 지상 4층에서 지상 7층 사이의 사무실로 분양한다.

나) 사업시행전의 건축물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다) 면적계산

- 전용면적 : 실면적 + 해당층 공유면적
- 공유면적 : 층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라) 법제 43조에 의한 보류지등을 둔다.

- 상기 가)호의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전시설을 보류지로 두어 조합에서 인팔 분양하여 미동의자분 청산금을 지급하고 잔여분전체를 공사비 및 기타 경비등의 댓가로 럭키개발(주)에 지급한다.

○ 보류지중에서 준공시까지 미분양분은 시공회사인 럭키개발(주)에 공사비, 대여금및 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댓가로 현물로 지급한다.

3) 단수처리 : 토지, 건물 공히 m^2 를 단위로 쓰며 토지는 소숫점이하 셋째 자리, 건물은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면적에 맞춘다.

4) 현금청산 :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중 조합 소유분 및 국공유지 이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현금 청산한다.

5) 청산금의 기준 및 지급시기 : 청산금의 청산기준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 분양가로 하여 징수 및 교부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

아.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별첨 1

차.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2

카.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대한 청산방법 : 별첨 3

타. 법제 43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법 : 별첨 4

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별첨 5

(별첨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1

번 호	분양대상자	중건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지 번	면 적		평 가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1	김 학 래	근덕동 232-3	66.0	68.85	39,930,000	8,743,950
		-22	136.0	62.81	80,240,000	6,092,570
2	김 학 래 리키개발(주)	-5	106.0	78.81	64,130,000	9,102,555
3	이 주 수	232-4	50.0	83.34	30,250,000	10,042,470
4	하 윤 순	272-1	110.0	88.88	64,900,000	10,176,760
5	피 원 동	273-1	89.0	60.50	51,175,000	7,229,750
6	이 애 자	-2	63.0	29.98	36,225,000	3,192,870
7	박 명 철	274	106.0	49.59	67,310,000	5,702,850
8	박 명 준	283-6	165.0	72.72	104,775,000	5,090,400
9	김 봉 우	-7	129.0	49.19	81,915,000	5,361,710
10	최 돈 형	-12	63.0	44.15	38,115,000	4,701,975
11	이 철 식	284-2	76.0	49.59	45,980,000	6,000,390
12	홍 상 기	-3	122.0	62.81	70,150,000	7,600,010
13	이 명 정	-4	93.0	39.67	47,802,000	4,661,225
14	조 용 기	289-1	44.0	56.59	19,976,000	5,602,410
15	신 종 우	-3	66.0	33.06	35,937,000	3,487,830
16	장 오 장	290-1	89.0	36.36	53,845,000	3,835,980
17	이 보 철	-2	76.0	36.36	48,260,000	3,835,980
18	이 종 명	-3	43.0	40.50	27,305,000	4,272,750
		291-1	33.0		20,955,000	
19	최 창 호	290-4	109.0	40.56	62,675,000	4,907,760
20	이 영 수	-5	73.0	36.53	46,355,000	4,420,130
21	황 의 수	-6	76.0	33.06	48,260,000	4,000,260
22	김 산 복	291-2	73.0	56.20	48,581,500	5,929,100
23	한 성 원	292	129.0	136.64	136,611,000	20,413,820
24	조 성 만	293	120.0	66.12	127,080,000	8,000,520
25	인 광 자	294-2	78.0	39.67	51,909,000	4,562,050
	최 속 자					
	계		2,383.0	1,452.54	1,550,646,500	166,968,095

분양예정의 대지또는건축시설의추산액						비 고
액	면 적		추 산 액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계	
48,673,950	16.97	165.0	16,385,511	83,439,039	99,824,550	
86,332,570	34.98	340.0	33,775,201	171,923,873	205,699,074	
73,232,555	27.26	265.0	26,321,097	134,003,182	160,324,279	
40,292,470	12.86	125.0	12,417,069	63,207,591	75,624,660	
75,076,760	28.29	275.0	27,315,622	139,058,629	166,374,251	
58,404,750	22.89	222.5	22,101,611	112,510,283	134,611,894	
39,417,870	16.20	157.5	15,642,031	79,645,040	95,287,071	
73,012,850	27.26	265.0	26,321,097	134,003,182	160,324,279	
109,865,400	42.44	412.5	40,978,260	208,583,117	249,561,377	
87,276,710	33.18	322.5	32,037,198	163,074,424	195,111,622	
42,816,975	16.20	157.5	15,642,031	79,645,040	95,287,071	
51,980,390	19.55	190.0	18,876,649	96,072,834	114,949,483	
77,750,000	31.38	305.0	30,299,194	154,224,976	184,524,170	
52,463,225	23.92	232.5	23,096,135	117,565,732	140,661,867	
25,578,410	11.32	110.0	10,930,111	55,619,590	66,549,701	
39,424,830	16.97	165.0	16,385,511	83,439,040	99,824,551	
57,680,980	22.89	222.5	22,101,611	112,510,283	134,611,894	
52,095,980	19.55	190.0	18,876,649	96,072,834	111,949,483	
31,577,750	11.06	107.5	10,679,066	54,358,141	65,037,207	
20,955,000	8.49	82.5	8,197,583	41,714,692	49,912,275	
67,582,760	28.03	272.5	27,064,577	137,797,181	164,861,758	
50,775,130	18.77	182.5	18,123,514	92,288,489	110,412,003	
52,260,260	19.55	190.0	18,876,649	96,072,834	114,949,483	
54,510,600	18.77	182.5	18,123,514	92,288,489	110,412,003	
157,024,820	37.16	361.2	35,880,117	182,644,900	218,525,017	
135,080,520	33.36	324.3	32,210,998	163,989,619	196,200,617	
56,471,050	20.06	195.0	19,369,083	98,605,386	117,974,469	
1,717,614,595	619.36	6,020.5	598,027,589	3,044,358,420	3,642,386,109	

(별첨 2)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번호	분양대상자	종 전 의 토 지 및 건 축 물					
		토 지				건	
		지 번	지목	원지적	시행면적	구 조	용 도
1	김 학 래	마포구공덕동 232-3	대지	149.0	66.0	세멘벽돌조	점포및주택
	"	" " 232-22	"	136.0	136.0	연화조	주 택
2	(김 학 래 러키개발(주)	" " 232-5	"	106.0	104.0	"	"
					2.0		
3	이 주 수	" " 232-4	"	50.0	50.0	"	주택및창고
4	하 윤 순	" " 272-1	"	162.0	110.0	"	주 택
5	피 원 동	" " 273-1	"	89.0	89.0	세멘벽돌조	"
6	이 애 자	" " -2	"	63.0	63.0	"	"
7	박 명 철	" " 274	"	106.0	106.0	무' 조	"
8	(박 명 준	" " 283-6	"	165.0	165.0	"	주택및부속
9	김 봉 우	" " "	"	"	"	"	"
	지 회 준	" " 283-7	"	129.0	129.0	"	주 택
10	최 돈 형	" " 283-12	"	63.0	63.0	세멘브릭조	"
11	이 철 식	" " 284-2	"	76.0	76.0	목 조	"
12	홍 상 기	" " -3	"	126.0	122.0	"	"
13	이 명 정	" " -4	"	93.0	93.0	"	"
14	조 응 기	" " 289-1	"	86.0	44.0	연화조	"
15	진 종 우	" " -3	"	66.0	66.0	목 조	"
16	장 오 장	" " 290-1	"	89.0	89.0	"	"
17	이 보 철	" " -2	"	76.0	76.0	"	"
18	이 종 명	" " -3	"	43.0	43.0	"	"
	"	" " 291-1	"	33.0	33.0	"	"
19	최 창 호	" " 290-4	"	109.0	109.0	"	"
20	이 영 수	" " -5	"	73.0	73.0	"	"
21	황 의 수	" " -6	"	76.0	76.0	"	"
22	김 산 복	" " 291-2	"	73.0	73.0	"	"
23	한 성 원	" " 292	"	129.0	129.0	철근콘크리트	"
24	조 성 만	" " 293	"	120.0	120.0	"	"
25	인 광 자	" " 294-2	"	79.0	78.0	무 조	"
	최 속 자	" "	"	"	"	"	"
	계			2,571.0	2,383.0		

권리명세 - 1						
들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비 고
동수	면 적	권리종목	권리내용	권 리 자		
				주 소	상 명	
1	68.85	근저당설정	설정계약	중구남대문로5가537	럭키개발(주)	
2	62.81	"	"	"	"	
1	78.81	"	"	"	"	
1	83.34	"	"	"	"	
1	88.88	"	"	"	"	
1	60.50	"	"	"	"	
1	29.98	"	"	"	"	
1	49.59	"	"	"	"	
2	72.72	"	"	중구충무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구남대문로5가537	럭키개발(주)	
2	49.19	"	"	중구남대문로5가537	럭키개발(주)	
1	44.15	"	"	"	"	
1	49.59	"	"	"	"	
1	62.81	"	"	"	"	
1	39.67	"	"	"	"	
2	56.59	"	"	중구남대문로1가14 중구남대문로5가537	(주)조흥은행 럭키개발(주)	
1	33.06	"	"	중구남대문로5가537	럭키개발(주)	
1	36.36	"	"	"	"	
1	36.36	"	"	"	"	
1	40.50	"	"	"	"	
1	40.56	"	"	"	"	
1	36.53	"	"	"	"	
1	33.06	"	"	"	"	
1	56.20	"	"	"	"	
1	136.64	"	"	"	"	
1	66.12	"	"	"	"	
1	39.67	"	"	"	"	
1,452.54						

(별첨 3) 분양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건축시설의 명세와					
소 유 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주 소	성 명	지 번	면 적		
			토 지	건 물	
서울시마포구공덕동 266-1	최 상 대	공덕동 266-1	258	130,640	
" 275	김 정 봉	275	289	158,670	
" 276	박 문 기	276	182	100,950	
" 277-4	이 도 재	277-4	228	119,010	
충남천안시오동동 63-7	은 완 기	283-18	249	33,060	
소 계			1,205	542,330	
서울시마포구공덕동 278-3	마 포 로	공덕동 264-1	155	559,840	
	제 2 구역	265	195	650,480	
	제 4 지구	277-1	73	23,400	
	재개발조합	278-3	119	135,540	
		283-5	332	228,100	
소 계			874	1,597,360	
	서 울 시	공덕동 278-4	94	-	
		292-2	80	-	
		328-1	128	-	
소 계			302	-	
합 계			2,381	2,139,690	

이 에 대 한 청 산 방 법 - 1			청 산 방 법	비 고
평 가 액				
토 지	건 물	계		
234,135,000	15,511,480	249,746,480	도시재개발법 제 44 조 및 동법 제 45 조에 의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은 서울시 가격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 판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행 자가 지급하여 가청산하고 사업완료후 법 제 53 조에 의거 청산한다. (단, 수용된 경우는 제외함)	미 분 양 신 청 지 분
191,664,000	18,009,045	209,673,045		
121,121,000	10,146,430	131,267,480		
248,292,000	15,649,815	263,941,815		
248,502,000	3,190,290	251,692,290		
1,043,714,000	62,607,110	1,106,321,110		
187,550,000	76,698,080	264,248,080	도시재개발법 제 43 조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처리하여 청산에 가름한다.	
212,355,000	113,508,760	325,863,760		
50,808,000	1,989,000	52,797,000		
133,161,000	15,180,480	148,341,480		
321,376,000	22,011,650	343,387,650		
905,250,000	229,387,970	1,134,637,970		
18,800,000	-	18,800,000	도시계획법 제 82 조 및 제 83 조 2 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청산에 가름한다.	
16,000,000	-	16,000,000		
25,600,000	-	25,600,000		
60,400,000	-	60,400,000		
2,009,364,000	291,995,080	2,301,359,080		

(별첨 4) 법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가)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층 별	구 조	용 도	건 물 면 적 내 용		
			계	전용면적	공유면적
지하 1 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관 메 시 설	4,113.054	3,025.200	1,087.854
지상 1 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은행및근린생활시설	1,450.216	1,074.750	375.466
2 층	"	은행및업무시설	1,897.442	1,406.190	491.252
3 층	"	업 무 시 설	1,897.442	1,406.190	491.252
4 층	"	"	322.442	238.964	83.478
5 층	"	"	197.442	146.322	51.12
6 층	"	"	256.942	190.422	66.52
7 층	"	"	792.442	587.278	205.164
8 층	"	"	1,897.442	1,406.190	491.252
9 층	"	"	1,815.600	1,345.538	470.062
10 층	"	"	1,897.442	1,406.190	491.252
11 층	"	"	"	"	"
12 층	"	"	"	"	"
13 층	"	"	"	"	"
14 층	"	"	"	"	"
15 층	"	"	"	"	"
16 층	"	"	"	"	"
17 층	"	"	"	"	"
계			29,820.000	22,076.564	7,743.436

나) 처분방법

1984.6.8 자로 시행자인 마포로 2-4 지구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인 청산금을 제외한 잔여 보류지 전체를 럭키개발(주)의 몫으로 하되, 조급하고, 준공시점까지 미 분양된 분은 현물로 지급한다.

토 지		건 물		합 계	비 고
면 적	추 산 액	면 적	추 산 액		
423.120	408,546,690	4,113.054	4,568,226,255	4,976,772,945	
149.120	144,051,524	1,450.216	2,049,390,306	2,193,441,830	
195.194	188,471,031	1,897.442	1,820,436,646	2,008,907,677	
195.194	188,471,031	1,897.442	959,476,213	1,147,947,244	
33.174	32,031,405	322.442	163,045,127	195,076,532	4층 8호
20.294	19,595,024	197.442	99,856,848	119,451,872	5층 8호
26.424	25,513,891	256.942	129,935,319	155,449,210	6층 7호
81.524	78,716,110	792.442	400,709,143	479,425,253	7층 4호
195.194	188,471,031	1,897.442	959,476,213	1,147,947,244	
186.780	180,346,830	1,815.600	918,086,227	1,098,433,057	
195.194	188,471,031	1,897.442	959,476,213	1,147,947,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67.640	2,961,982,815	29,820.000	19,744,448,001	22,706,430,816	

럭키개발㈜ 사이에 기 약정 체결된 공사 도급서에 의거 미동의자분
 합측에서 분양하여 럭키개발㈜에 공사비, 대여금 및 기타 경비로 지

(별첨 5)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지 번	지 번	원 지 적	공공용지	소 유 자
마포구공덕동 278-4	도 로	99.0	94.0	서울특별시
" 292-2	"	86.0	80.0	"
" 328-1	"	3,686.0	128.0	"
합 계		3,871.0	302.0	
나)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도로)				
노 선 명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소로 1 류	10.0 m	86.0 m	공덕동 293	공덕동 289-1
소로 1 류	10.0 m	50.0 m	공덕동 232-3	공덕동 239-4
다)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권리명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공공용지	소 유 자
마포구공덕동 292	대 지	129.0	19.0	한 성 원
" 293	"	126.0	117.0	조 성 만
" 294-2	"	79.0	61.0	권 선 종
" 290-6	"	76.0	50.0	황 의 수
" 290-5	"	73.0	37.0	이 영 수
" 290-4	"	109.0	53.0	최 창 호
" 283-3	"	66.0	62.0	신 종 우
" 289-1	"	86.0	44.0	조 용 기
" 284-4	"	93.0	68.0	이 명 정
" 284-3	"	126.0	86.0	홍 상 기
" 284-2	"	76.0	27.0	이 철 식
" 272-1	"	162.0	105.0	하 문 순
" 274	"	106.0	29.0	박 명 철
" 273-1	"	89.0	3.0	피 원 동
" 273-2	"	63.0	2.0	이 애 자

지 번	지 목	원 지 적	공공용지	소 유 자
마포구공덕동 232-22	대 지	136.0	28.0	김 학 래
" 232-5	"	106.0	104.0	김학래, 리키개발주
" 232-2	"	149.0	65.0	김 학 래
" 232-4	"	50.0	1.0	김 학 래
합 계		1,900.0	961.0	

라) 기존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명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공공용지	소 유 자
마포구공덕동 264-1	대 지	155.0	3.0	마포로제 2 구역제 4 지구 재개발조합
" 265	"	195.0	5.0	"
" 266-1	"	258.0	108.0	최 상 대
합 계		608.0	116.0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변경결정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5. 25
서울특별시장

○ 시설(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너비(m)	길이(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320	방화동 289-1	방화동 500-2	
변경	"	"	"	1,328			노선연장 L=8m

○ 시설(하수도)조서

구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5-6	1035	방화동 272-4	방화동 213-2	
변경	"	"	"	"	지형사정으로 인한 일부 구간 위치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 ('72.1.7) 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2 호 ('72.1.7)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도로(봉천 1 동 708-715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 26 조,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5.5.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8-7, 716-11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봉천 1 동 708-715 간 도로개설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6m$ $L=160m$
· 콘크리트포장($T=20cm$) $A=9.6a$
· 하수도($D=450mm - 900mm$) $L=16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시행인가일로 부터 15일 이내
○ 준공 : 인가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개재생략)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1	719-4	건물	세멘 브릭조	5	주택	김창홍 봉천동 719			가옥대장에 미등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m ²)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2	719-4	담 장 대 문	브릭조 철 재	H=2.3m H=15m 1 식		김창흠	봉천동 719		
3	720	담 장 대 문 석 축	브릭조 철 재	H=2.3m L=8m 1 식 H=1.0m L=8m		권태영	용산구용문동 28-43		
4	728-20	대 문 화장실	철 재 브릭조	1 식 약 3m ²		김완배	봉천동 728-20		
5	719-21	건 물	브릭조 스레트	약 8m ²		김순희 김완배	동작구상도동 301-42 봉천 동 728-20		
6	708-7	담 장		H=1.5m L=8m		한백록	동작구흑석동 134		
7	712-13	건 물	세 멘 브릭조	6 m ²	창 고	이명규 김춘자 이선규 이청규	봉천동 712-13		
8	712-12	건 물	복 조 브릭	4 m ²	상 가	문석동	봉천동 712-12		

토 -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목 m ²	면적 m ²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712-74	대	4	4		윤용학	봉천동 712-11		
2	712-77	"	7	7		이명규 김춘자 이선규 이청규	" 712-13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변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관계인	주소 성명		
3	712-75	대	7	7		김용화 한경옥	용산구이촌동 302-61 제일아파트 201호 동작구상도 2동 227-1	근저당	
4	712-76	대	13	13		문석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봉천동 712-12 중구남대문로 2가 9-1 (은천지점)	"	
5	714-2	전	7	7		서락보	봉천동 716-1		
6	718-1	대	7	7		박충남 관악구 협동조합	봉천동 718 구로구독산동 92-50		
7	719-47	대	11	11		김창흠	봉천동 719		
8	720-1	전	13	13		권태영	용산구용문동 38-43		
9	719-48	대	5	5		노진식	봉천동 713-13		
10	719-49	대	3	3		김순희 부민신용 협동조합	동작구상도동 310-42 인천시 중구 답동 13번지	김순희지 분근저당 권 설정지	공유자재 분 169분 지 136
11	728-222	대	2	2		김안배	봉천동 728-20		

◎ 서울특별시고시제 35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포장) 실시
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20 (70.7.2) 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신림 2동
103번지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 26 조,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
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포장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

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바
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게 열람토록함.

1985. 5. 25.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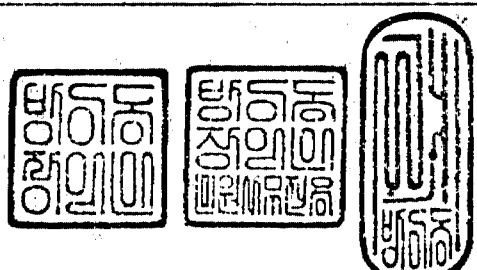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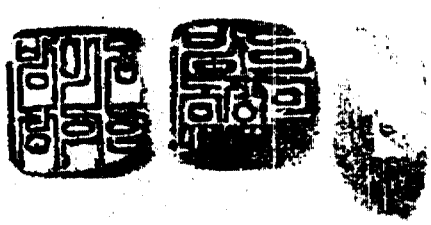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25 의 12-126 의 1 ~ 103
의 101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신림 2동 103번지 도로포장공사)

<p>다)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 = 6-12 m L = 130 m</p> <p> - 콘크리트포장 (T = 20 cm) A = 9.66 a</p> <p> 하수도 (D = 450 mm) L = 85 m</p>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상(관악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 o 착공: 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내</p>	<p>o 준공: 인가일로부터 85.7.10.</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p> <p>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p> <p>아)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 (제재생략)</p>
--	--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관	계인 주소 성명		
1	125-30	대	16	16	도로	배순열	신림동 125-15		
2	125-27	도	69	69	"	정구학	경기도파주군과평면 리천리 442		
3	126-4	대	188	94	"	김은식	대방동 44-156		
				94	"	윤용진	신설동 205-47		
4	126-5	도	46	46	"	박충식	목포시수강동 1가 4번지		
5	126-6	도	36	36	"	박충식	목포시수강동 1가 4번지		
6	127	대	89	89	"	황진택	경기 광주군 광주면 외 5인 경안리 123		미등기
7	127-57	도	370	370	"	박동식	목포시수강동 1가 4번지		
계				81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공 고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강동구공고제 4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관인개각사용승인공고</p> <p style="margin-top: 10px;">강동구 방이동 동장직인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전용) 및 동계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p>		<p>인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1985.5.25 강 동 구 청 장</p> <p>1. 관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이동장의인 (일반사무용) ○ " (민원사무전용) ○ 방이동 계인 <p>2. 사용개시일 1985.5.25</p> <p>3. 관인의 인명</p>
인 명	신 규	폐 기
		
공인명	방이동장 직인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전용) 및 계인	